

| | |
|--------------|----------------|
| 의안번호 | 제 971 호 |
| 의 결 연 월 일 |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발의자 | 육미선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10일 |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육미선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971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10일

발의자 : 육미선, 임영은, 이옥규,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송미애

1.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조례 통합권고에 따라 조례에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2022~2026)’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위원회의 심의(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 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8조부터 안 제29조까지)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
- 다. 입법예고 : 2022. 1. 3. ~ 1. 8.(5일 간)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도시 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50%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3. “공공시설물등”이란 도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국적,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을 포괄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6. “공공디자인등 사업”이란 도가 다음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 나.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디자인의 기본원칙) 도내 공공시설물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국적,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게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게 할 것
7. 이용자중심의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등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 및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관할 시·군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시군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공고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의 적용과 관리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
3.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6. 제2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7. 공공디자인 공모전 출품작 심사 및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에 필요
한 심사
8.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토목, 공공예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중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촉하여야 한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전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 도의 각 부서
 - 2. 도비를 30% 이상 지원받는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
- ②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은 별표 1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 1. 전체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고 공공시설물등의 사업비 합계가 **3 억원** 이상인 경우
 - 2. 공공시설물등의 사업비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3. 공공용품 및 시각이미지 :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4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 준수 여부
 - 2.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 간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3. 제2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제17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동일·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2.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제품 및 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4.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5.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
6. 재해·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제18조(심의절차) ① 도지사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위원회 재심의

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 실행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영 제11조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적용한 사항 외에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또는 취소, 적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5조(공공디자인 전시회 개최)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 공공디자인을 개발·장려하고 이를 발굴·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작품을 선정·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출품 작품의 심사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5명 이하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6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이 시·군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군별로 시범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시·군 또는 주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7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과 공공디자인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내

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25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도보 및 도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그 밖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단체, 전문가, 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등 세부사항 및 심의대상

(제2조제5호, 제9조제2항, 제16조 관련)

1. 공공디자인(공공시설물 등)

| 분류 | 시설물의 종류 |
|---------------------------|--|
| 도로시설물 (도로부속 시설물 포함) |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 포함)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자. 가드레일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방재시설물 파. 터널, 생태통로 하. 등산로, 산책로 |
| 도시철도 시설 | 가.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나. 지하철 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
| 하천 시설 |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
| 자전거 이용시설 | 자전거보관대 등 |
| 전기통신 설비 |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
| 정보통신망 |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

| 분류 | 시설물의 종류 |
|----------------|--|
| 문화관광시설 |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
| 가로녹지시설 |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
| 환경관리시설 |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
| 교통 · 보행 · 안내시설 |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나. 보행관련 안내판 다. 대중교통 정류소(택시·버스 승차대) 라. 현수막 게시대 마. 볼라드, 펜스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횡단보도 쉘터 |
| 도로점용 · 편의시설 |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 · 벤치(의자) · 그늘막 · 파고라 · 쉘터 · 음수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기타 |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등 |

※ 상기 공공시설물들과 유사한 시설물은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등으로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공공용품 및 시각이미지

| 분류 | 종류 |
|-----------------------|--|
| 공공용품 (제작·설치 해당) |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
| 시각이미지 |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

3. 범용디자인

| 분류 | 세부항목 |
|------|---------------------------------------|
| 정보매체 |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
| 시설물 | 다양한 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
| 공간 | 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
| 지역 |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디자인 |
| 프로그램 | 범용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

[별지 제1호 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심의 재심의 자문

| | | |
|------|----------------|--------------------------|
| 신청기관 | 기관명 (주관부서명) | 담당자 (연락처) |
| 신청사항 | 사업명 | |
| | 사업위치 | |
| | 사업비 | ※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도비/시군비) |
| | 사업기간 | ※ 전체사업기간 (설계용역기간) |
| | 세부내용 | ※ 심의대상 상세 기재 |
| 용역사 | 업체명 | |
| | 주소 | |
| | 대표자 (대표전화) | 담당자 (연락처) |
| 참고사항 | | |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 |
|------|---------------------------------------|
| 첨부서류 | 공공디자인 세부계획(안) 심의도서 00부(위원회에 따라 부수 조정) |
|------|---------------------------------------|

[별지 제2호서식] (제18조제1항 관련)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통지서

| | | | | |
|----------|--------------------------------|--------------|--|--|
| 안건번호 | | | | |
| 신청기관 | 기관명 | 심의일 주관부서명 | | |
| 신청개요 | 사업명 | | | |
| | 사업대상지 | | | |
| | 사업개요 | 사업비 | | |
| | | 규모 | | |
| | | 용도 | | |
| | | 구조 | | |
| 신청내역 | | | | |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의결() | | | |
| 심의(자문)내용 | | | | |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관련법령 발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충북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의 근거로 필요한 비용 발생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위원회 수당
 -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3. 관련조문

- 안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5개년 진흥계획 수립
- 안 제21조(수당)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원
- 안 제26조(공공디자인등 사업의 시행)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추계하였음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수립
 : 100,000천원 × 1식 = 100,000천원
 - 공공디자인 위원회 연 평균 10회 개최
 : 참석위원 7인 × 평균 수당 10만원 × 10회 × 5년 = 35,000천원
 - 공공디자인 등 사업(3건) 추진
 : 180,000천원 × 1건(풍경농촌마을사업) × 5년 = 900,000천원
 : 60,000천원 × 1건(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 5년 = 300,000천원
 : 22,500천원 × 1건(공모전) × 5년 = 112,500천원

나. 추계 결과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1,430,000천원 정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 구 분 | 1차년도 (2022년) | 2차년도 (2023년) | 3차년도 (2024년) | 4차년도 (2025년) | 5차년도 (2026년) | 계 |
|--------------------|-----------------|-----------------|-----------------|-----------------|-----------------|------------------|
| 세 출 | 266,000 | 266,000 | 266,000 | 266,000 | 366,000 | 1,430,000 |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수립 | 0 | 0 | 0 | 0 | 100,000 | 100,000 |
|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 3,500 | 3,500 | 3,500 | 3,500 | 3,500 | 17,500 |
|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 262,500 | 262,500 | 262,500 | 262,500 | 262,500 | 1,312,500 |

- 비용추계결과 기 수립·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수반사항은 없음